제2024-23호	삼우 가정통신문	행복한 만남을 이어가는 작은학교
	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&A카드뉴스 안내	

홈페이지 www.samwoo.es.kr 전화 263-4215

국민권익위원회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청탁금지법 관련 빈발 질의·오해사항에 대한 「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&A」를 담은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〈주요 내용〉

▶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**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카드를 제공**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**저촉되지 않음**

▶ 스승의 날 **학생대표 등이** 교사에게 **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·꽃**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**사회상규에 따라 허용**

▶ **학생에 대한 평가·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**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**5만원 이하라도 허용 안됨**(ex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상당 케이크 선물 안됨)

▶ 이전 학년 담임교사가 **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** 사교·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**5만원 이하라도 허용 안됨**

▶ **학부모회·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이 교장, 교감 및 선생님**들에게 선물은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**가액기준 내의 선물도 허용 안됨**

▶ **졸업한 후**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**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(매 회계연도 300만원)까지 가능**

▶ **누구든지** 교직원등에게 **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**하거나 **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**를 한 경우 **제재대상**에 해당하므로 **교직원등이 금품 등을 지체없이 신고** 또는 **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**되더라도 **제공자는** 금품 가액에 따라 **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**이 됨

2024. 5. 3.

삼 우 초 등 학 교·병 설 유 치 원 장

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&A 카드뉴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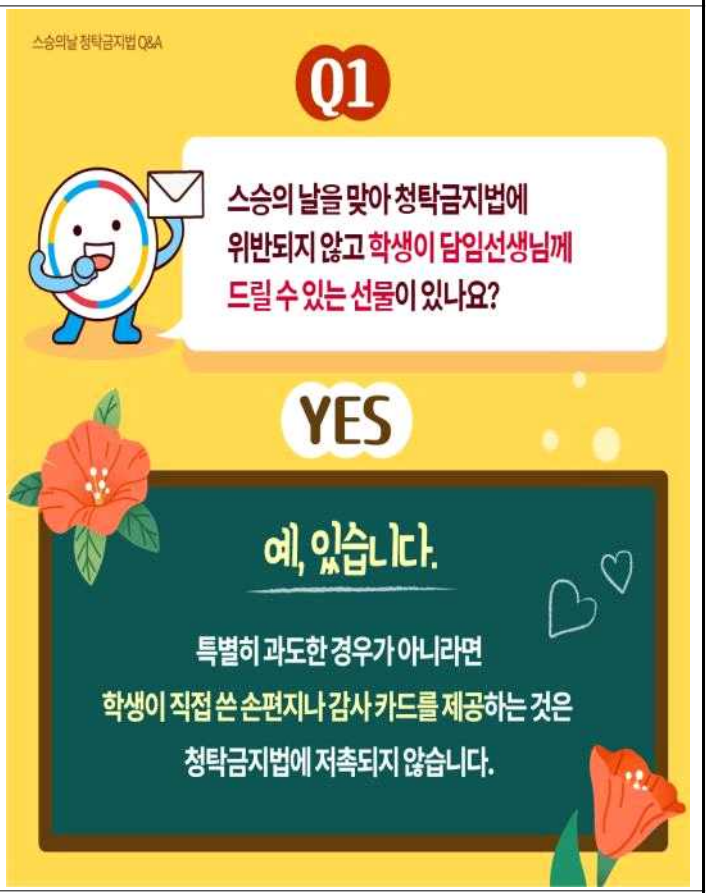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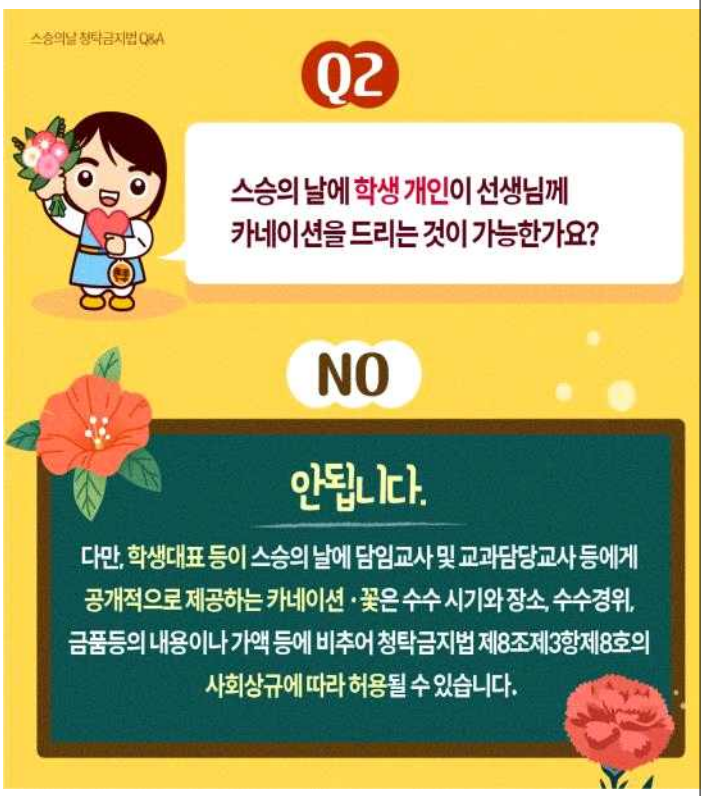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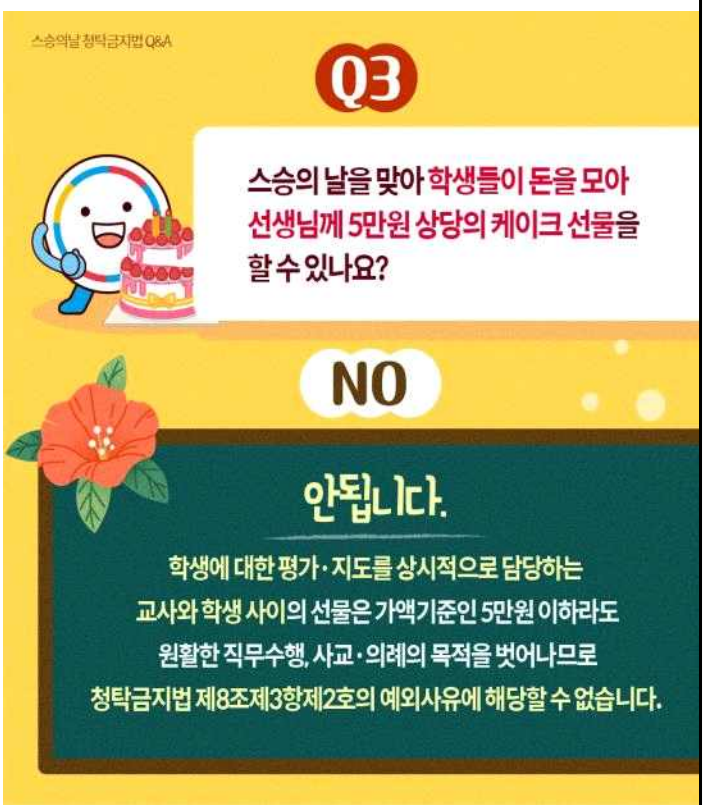

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&A 카드뉴스

스승의날 청탁금지법 Q&A

Q4

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5만원 이내 선물을 해도 되나요?

YES

예, 가능합니다.

학년이 끝나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 등이 종료된 경우라면 작년 담임교사에게 사교·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(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5만원)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, 이전 학년 담임교사가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사교·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.

스승의날 청탁금지법 Q&A

Q5

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들이 스승의날을 맞아 교장, 교감 및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?

NO

안됩니다.

학생들의 성적, 평가,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, 교감 및 교사와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,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.

스승의날 청탁금지법 Q&A

Q6

제자가 졸업한 학교 은사님께 15만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괜찮나요?

YES

예, 가능합니다.

졸업한 후에는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(매 회계연도 300만원)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.

스승의날 청탁금지법 Q&A

Q7

수수가 금지된 선물을 받은 선생님만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나요?

NO

아닙니다.

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, 교직원등이 금품 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.